

#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년월일 2025. 6. .  
제 출 자 오강현 의원

## 1. 제안이유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
- 지원대상 선정 (안 제5조)
- 지원내용 및 교육 (안 제6조 ~ 제7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협의
-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5. 5. . ~ 2025. 5. .
    - 예고결과 :
  - 부서협의
    - 협의기간 : 2025. 4. . ~ 2025. 5. .
    - 협의결과 :
  - 관련부서 : 노인장애인과

# 김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재활용품 수집 활동의 지속성, 생활 형편, 재산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이나 복지 목적의 진입자는 배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교통사고 방지 및 야간 식별 가능 개인보호 장구
2. 하절기와 동절기 방서·방한용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이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관련 사회 참여 프로그램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1. 4. 28., 2014. 1. 21., 2023. 3.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1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